

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70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 김희태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9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(안 제2조제3호)
-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, 제60조, 제103조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42호
- 예고기간: 2023. 11. 13.(월) ~ 2023. 11. 20.(월)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9. 원안가결